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9
----------	----

제출년월일 : 2026. 8. 26.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자살예방 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의거,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창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명 : 창원시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다)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 운영)

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2) 추진 필요성

가) 사업동향 측면

: 사업의 다양화, 전문화 흐름에 따른 유연한 대처 어려움

나) 인력 측면

: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고도로 훈련된 전문요원 부족하고 종사자의 잦은 퇴사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공백 발생

다) 평가 측면

: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업인력 1인당 정신질환자 관리자 수 축소 지향(사례관리 업무 강화),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1)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수행, 평가 및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 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4)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 자살예방사업
- 5) 지역사회내 정신보건 자문 및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등

라.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 1) 소 재 지 : 마산보건소(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 2) 기본시설 :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278m²)
- 3) 운영인력 : 10명(전문인력 5, 미자격 5)

4) 이용대상 : 정신질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5) 시설용도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6)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7. 1. 1.~2029. 12. 31.)

바. 민간위탁 예산

연도별	사업비용 (백만원)	예산과목	산출근거 (2026년 본예산 기준, 교부금액 따라 변동가능)
2027년	970	민간위탁금	인건비 646, 사업비 324
2028년	970	민간위탁금	인건비 646, 사업비 324
2029년	970	민간위탁금	인건비 646, 사업비 324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 2026. 8. 21.(금)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2) 2026. 8. 21.(금)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통지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現. 운영형태(직영)와 비교)

- 1)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582백만원/연) 효과
 - 가) 마산보건소 공무원 정원(9명⇒3명) 감소, 시공무직 인건비 삭감
 - 나) 시간선택제임기제(10명) 인건비 시비(438백만원/연) 확보 불필요
- 2) 정신보건 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
 - 가) 위탁기관 전문경험(know-how) 활용, 전문성 및 기술성 제고
 - 나) 위탁기관 자율성 보장으로 양질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1) 관련근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
- 2) 검토의견

검토기준	검토결과
1.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대상자와의 유대관계 등 민간부문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직영보다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합함.[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2호 연구 결과] - 정신과적 위기관리 및 자살에 대한 적극적·전문적 개입 가능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의 신속 대응을 위해 중단 없는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며, 위탁기관 변경시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직영에 준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관리에 기여하여 사회적 비용 감소 - 시공무직^{3명} 인건비^{약 1억 5천} 절감, 잦은 인력교체에 따른 행정력 낭비 감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문성 확보 가능
5. 성과측정의 용이성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자 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자살률 감소 등 계량적 성과측정 용이
6. 관리운영의 투명성	위·수탁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기관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해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의 경쟁 선발로 양질의 서비스 공급 가능 -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직영 88(36.5%), 위탁 153(63.5%)

다.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8.16.]

제7조(위탁 운영)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01.01]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 31., 2021.12.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